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82호 2017. 3. 8.(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2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 3  
 거창군 고시 제2017-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4  
 거창군 고시 제2017-2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 5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290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등 공시  
 송달 공고(11월분) ..... 7  
 거창군 공고 제2017-291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공시송달  
 공고(11월) ..... 9  
 거창군 공고 제2017-292호 「지방도 1089호선 굴곡도로 선형개량공사」 보상계  
 획 열람 공고 ..... 11

거창군 공고 제2017-295호 「가북면 농어촌도로(308호선)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15

거창군 공고 제2017-30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20

거창군 공고 제2017-319호 군계획시설(공간시설: 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1

거창군 공고 제2017-32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143호선)사업 공  
사완료 공고 및 준공검사 필증교부 ..... 24

거창군 공고 제2017-335호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입법예고 ..... 26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5호 거창군의회 자치법규 공포 ..... 31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농지조성(밭작물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sup>2</sup> )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계	1,592 m <sup>2</sup>	1,592 m <sup>2</sup>				
거창읍 장팔리	산293-7	829 m <sup>2</sup>	12,210천원	2017.03.04. ~ 2018.03.03.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1길 29-12	이 은 식
	산293-8	763 m <sup>2</sup>				

3. 사업효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7년 3월 3일

# 거창군수

거창군 고시 제2017-27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3월 03일

### 거 창 군 수

신 청 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주 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하 천 명 (하천등급)	신원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1575번지	
	면 적	일시점용: 288.84㎡ 영구점용: 62.96㎡	
	점용기간	일시점용: 2017년 02월 23일부터 ~ 2017년 4월 23일 영구점용: 2017년 02월 23일부터 ~ 영구	
	목적 및 사유	신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관 설치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3. 08.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757-1 외 2건(부여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839-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절부길 24-5	2009-12-28	2017-03-08	고려 흥무란 때 왜적에게 절개를 지켜 순절한 탐진 최씨로 인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412-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757-1	2009-12-28	2017-03-08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37-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2길 72-57	2009-04-01	2017-03-08	양기, 음기를 텃골이라한데서 붙여진 법정리명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사전안내,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공고제목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3. 03. ~ 2017. 03. 17.(15일간)
- 공고대상 : 불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055-940-329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3월 03일

## 거 창 군 수

자동차 정기검사명령서 및 운행정지명령서 반송내역(2016년11월)

연번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반송일자	주 소	반송사유	등기번호	비고
1	49나2892	정*진	2016.11.0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폐문부재	16035013 39173	
2	08더8006	오*숙	2016.11.04	경상남도거창군 거창읍 대평*길 **	이사감	16035013 39570	
3	96부1905	주 식 회 사 원*** 엔지니어링	2016.11.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번지	폐문부재	16035013 39573	
4	28가9609	유*희	2016.11.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길**	폐문부재	16035013 39574	
5	66두1686	김*용	2016.11.1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한산*길**	이사감	16035025 98480	
6	37부2061	정*운	2016.1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	폐문부재	16035025 98482	
7	경 남 8 5 다 2594	㈜아*	2016.11.2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	폐문부재	16035034 79865	
8	08라6313	최*열	2016.11.2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양*길 **	수취인불명	16035034 89872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 2017. 03. 03. ~ 2017. 03. 17.(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03일

거 창 군 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 내역(11월분)

연번	차량 등록 번호	소유자	최초과태료	반송일자	주 소	반송사유	등기번호	비고
1	62리 8416	전*준	300,000	2016.11.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길 **	주소불명	16035013 450200	
2	90보 8009	로****발	300,000	2016.11.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	이사감	16035013 40212	
3	34루 4353	홍*표	300,000	2016.11.1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주암길 **	이사감	16035013 40214	
4	03리 2638	익*****단	20,000	2016.11.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	이사감	16035013 40183	
5	69서 9149	임*훈	300,000	2016.11.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	이사감	16035013 40217	
6	74우 8948	김*근	20,000	2016.11.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	폐문부재	16035134 0181	
7	95주 5462	이*성	20,000	2016.11.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길 **	폐문부재	16035013 40195	
8	19어 3070	박*민	60,000	2016.11.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노혜*길 **	폐문부재	16035013 40193	
9	17고 3849	변*신	50,000	2016.11.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길 **	폐문부재	16035013 40194	
10	26무 9342	송*욱	20,000	2016.11.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길 **	폐문부재	16035013 40196	
11	56도 3953	이*우	20,000	2016.11.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	폐문부재	16035013 40191	
12	85루 2915	이*화	300,000	2016.11.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길 ***	폐문부재	16035013 40199	

##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1089호선 굴곡도로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지방도 1089호선 굴곡도로 선형개량공사
- 나. 위치 : 경남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로정비 L=203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 2. 보상내용

- 가. 토지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연교리 일원
  -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 3.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3. 2. ~ 2016. 3. 17.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조서(토지명세)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b>합계</b>	<b>14필지</b>			<b>23,359</b>	<b>3,600</b>				
1	연교리	산 266-1	도	도	1,912	804	거창군			
2	연교리	산 266-2	도	도	567	149	경상남도			
3	연교리	168-3	과	과	16,262	764	김근식	경남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168-4		
4	연교리	산313	구	구	1,169	932	국(농림수 산부)			
5	연교리	산 265-1	도	도	424	243	거창군			
6	연교리	191-1	도	도	156	81	거창군			
7	연교리	191-2	도	도	24	18	백 형 종 외 2인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695		
8	연교리	산 265-2	도	도	450	243	백 형 종 외 2인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695		
9	연교리	168-8	과	과	30	30	김근식	경남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168-4		
10	연교리	187-1	도	도	144	3	경상남도			
11	연교리	1177-7	구	구	160	35	국(농수산 부)			
12	연교리	170-6	도	도	821	50	경상남도			
13	연교리	1223	도	도	1,230	238	국(국토교 통부)			
14	연교리	168-7	도	도	10	10	경상남도			

##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가북면 농어촌도로(308호선)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가북면 농어촌도로(308호선) 정비공사
-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로정비 L=682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 2. 보상내용

-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일원
-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 3.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3. 2. ~ 2016. 3. 17.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b>합계</b>	<b>56필지</b>			<b>195,428</b>	<b>8,197</b>				
1	용암리	427-2	도	도	149	146	이재향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431		
2	용암리	427-1	대	대	281	58	김기철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427		
3	용암리	2151	도	도	4,195	85	국(국토교 통부)			
4	용암리	432-2	도	도	3	3	거창군			
5	용암리	433-3	답	답	1,879	226	박종기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6		
6	용암리	433-2	도	도	46	46	거창군			
7	용암리	434-2	도	도	36	36	거창군			
8	용암리	365-2	도	도	258	184	거창군			
9	용암리	437-2	도	도	63	63	거창군			
10	용암리	362-3	도	도	10	10	거창군			
11	용암리	374-3	도	도	529	492	거창군			
12	용암리	363-1	전	전	3,063	381	장해봉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23		
13	용암리	374-6	임	임	928	66	장해봉	경남거창군가북면개금길256		
14	용암리	374-1	임	임	1,097	142	상개금마을회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2		
15	용암리	375-2	도	도	83	69	거창군			
16	용암리	375-1	전	전	192	21	이진기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84		
17	용암리	161-8	임	임	402	9	상개금마을회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2		
18	용암리	161-7	임	임	560	29	김기철	경남 거창군 가북면 개금길 33-1		
19	용암리	161-3	도	도	132	132	거창군			
20	용암리	161-6	임	임	540	392	상개금마을회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2		
21	용암리	165-2	도	도	169	169	거창군			
22	용암리	161-2	도	도	7	4	거창군			
23	용암리	151-5	도	도	7	7	거창군			
24	용암리	151-4	도	도	13	13	거창군			
25	용암리	151-3	도	도	7	7	거창군			
26	용암리	151-1	답	답	3,018	389	이진기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84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	용암리	151-2	도	도	3	3	거창군			
28	용암리	149	전	전	2,625	86	이 순 자 외 1인	경남 거창군 남하면 아주1길 420		
29	용암리	427-3	대	대	26	26	이재향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431		
30	용암리	2148	천	천	143,60 7	129	국(국토교 통부)			
31	용암리	433-1	대	대	650	125	박종기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6		
32	용암리	434-1	전	전	618	158	이현태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656		
33	용암리	436-3	도	도	17	17	거창군			
34	용암리	436-1	임	임	602	602	김종순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316		
35	용암리	438	전	전	1,107	54	어윤중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7 주공아파트 102-302		
36	용암리	437-1	대	대	331	193	어윤중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7 주공아파트 102-302		
37	용암리	2146	도	도	5,574	2,343	국(국토교 통부)			
38	용암리	361-1	학	학	3,465	206	개 금 마 을 회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		
39	용암리	362-2	도	도	43	9	거창군			
40	용암리	374-4	임	임	50	24	석운식			
41	용암리	360-7	임	임	3,347	9	상 개 금 마 을 회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2		
42	용암리	360-2	도	도	215	215	거창군			
43	용암리	360-1	창	창	456	24	상 개 금 마 을 회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2		
44	용암리	360-3	전	전	927	83	신일기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89-3		
45	용암리	162-1	답	답	2,833	42	신일기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2		
46	용암리	162-2	도	도	23	23	거창군			
47	용암리	164-2	도	도	36	36	최복술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		
48	용암리	164-1	답	답	2,112	23	최재호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270-6 오성빌라 3-403		
49	용암리	165-1	답	답	2,883	104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해 인사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50	용암리	166-1	답	답	1,993	57	정연옥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77		
51	용암리	167-2	도	도	20	20	홍금석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2		
52	용암리	167-1	답	답	1,554	29	홍해성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44		
53	용암리	168-3	답	답	428	19	홍해성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44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4	용암리	168-1	창	창	653	11	홍해성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44		
55	용암리	171-1	전	전	1,319	104	신일기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2		
56	용암리	171-2	도	도	244	244	거창군	경남거창군가북면용암리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6.

### 거창군수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마모에 따른 인영 식별 어려움으로 신규 제작
2. 등록 공인
  - 가. 등록 공인: 1점
  - 나. 최초 사용일: 2017. 3. 7.
3. 폐기 공인
  - 가. 폐기 공인: 1점
  - 나. 폐기 방법: 거창군 기록관(문서고) 이관
4. 등록 및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명	규격	인영	
		등록	폐기
민원사무전용남상면장인	2.0cm×2.0cm		

## 거창군계획시설(공간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군계획시설(교통시설:제3호 교통광장)사업 변경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7.

### 거 창 군 수

####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면	리	면적 (㎡)			
군 계획시설	제3호 교통광장	거창	대동	5,095㎡	거창읍 대동리 829-1번지 일원	경고 제2113호 (65.12.31)	당초'12.03.~'16.12.31 <b>변경'12.03.~'17.12.31</b>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변경없음(기재생략)

4. 열 랐 기 간 : 2017. 3. 9. ~ 2017. 3. 22(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불임참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전화(055-940-3592), FAX(055-940-35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편입토지조서 (3호 교통광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25,889	5,095					
1	거창읍 대동리	828-3	도	387	324		국(건설부)			
2	거창읍 대동리	890-5	대	169	21		국(건설부)			
3	거창읍 대동리	829-1	도	460	460		국(재무부)			
4	거창읍 대동리	829-2	도	43	43		국(건설부)			
5	거창읍 대동리	861-2	도	50	15		국(건설부)			
6	거창읍 대동리	861-8	대	78	78		거창군			
7	거창읍 대동리	861-6	대	119	119		“			
8	거창읍 대동리	861-5	대	166	166		“			
9	거창읍 대동리	861-1	대	186	186		“			
10	거창읍 대동리	829-3	도	33	33		“			
11	거창읍 대동리	964-33	도	10	10		국(건설부)			
12	거창읍 대동리	964-34	대	13	2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1 주공아파트 418-204	이*인			
13	거창읍 대동리	841-9	대	15	15		거창군			
14	거창읍 대동리	841-4	도	787	415		“			
15	거창읍 대동리	841-3	대	10	10		“			
16	거창읍 대동리	841-2	대	119	119		“			
17	거창읍 대동리	830-2	도	13	13		“			
18	거창읍 대동리	841-8	대	77	77		“			
19	거창읍 대동리	837-6	도	20	20		“			
20	거창읍 대동리	840-4	도	178	178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1	거창읍 대동리	840-3	도	72	72		거창군			
22	거창읍 대동리	782-5	도	1,485	608		국(건설부)			
23	거창읍 대동리	837-3	도	354	295		국(건설부)			
24	거창읍 대동리	831-3	도	162	162		국(재무부)			
25	거창읍 대동리	826-5	대	87	87		거창군			
26	거창읍 대동리	827-5	대	107	107		거창군			
27	거창읍 대동리	826-1	대	272	272		거창군			
28	거창읍 대동리	823-1	대	10	10		“			
29	거창읍 대동리	825-2	대	38	38		“			
30	거창읍 대동리	826-4	도	68	68	대동리 826-1	박*석			
						중앙리 364	백*길			
31	거창읍 대동리	825-1	도	75	32		거창군			
32	거창읍 대동리	964-1	도	19,153	319		국(건설부)			
33	거창읍 대동리	815-8	도	346	48		거창군			
34	거창읍 대동리	831-4	도	142	142	대동리 831-1	김*현			
35	거창읍 대동리	831-5	도	56	56		거창군			
36	거창읍 대동리	831-1	대	93	93		“			
37	거창읍 대동리	831-2	대	13	13		“			
38	거창읍 대동리	832-5	대	41	41		“			
39	거창읍 대동리	837-5	대	96	96		“			
40	거창읍 대동리	836-3	대	166	166		“			
41	거창읍 대동리	837-1	대	99	45		“			
42	거창읍 대동리	860-1	대	21	21		“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43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155호(2015.11.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143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 03. 08.

###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60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대평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143호선) 정비공사	거창읍 대평리 1058-8번지	소로	2	143	343	8.0	3,495	경고348호 (‘07.08.30)	2015.12.03 ~2017.03.06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

귀하(중)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명	거창군수	법인등록번호	611-83-0001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b>준 공 내 용</b>						
사업명칭	대평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43호선) 정비공사					
사업목적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긴급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업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1058-8번지 일원	사업량	L=343.0m, B=8.0m			
시행방법	신청인 직영	시행기간	2015.12.03 ~ 2017.03.06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전	구	답	도	합계
	면적	0	116	2,907	462	3,485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도로				계
	면적	3,485				3,485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계
	개요	3,485				3,485
소요사업비	1,796백만원		공사완료일	2017. 03. 06		

2017년 03월 08일

거 창 군 수

##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 거 창 군 수

#### 1. 자치법 규명

가.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2. 제정이유

『사도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도개설을 위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3. 주요 제정내용

##### 가.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함(안 제2조)

-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선폭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 0.5미터 이상 허용

####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참조 : 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거창군 건설과

(50132)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전화 : 055-940-3551, FAX : 055-940-35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과 (전화 : 055-940-3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p>「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03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거창군수 귀하</p>				

□ **사도법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차선 및 차도) ③**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평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평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차선평(미터)
리도	5.0
농도	3.0

**제7조(길어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구분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면도	1.0	0.5
리도	0.75	0.5
농도	0.5	-

##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5호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의회 의장 김 종 두

2017. 3. 8.

거창군의회규칙 공고 제30호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③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 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41조제1항 중 “표기”을 “표결”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생략)                      ② <u>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u>                      ③ <u>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u></p>
<p>제41조(표결방법) ① <u>표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u>                      ②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41조(표결방법) ① <u>표결</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                      ① ~ ③ (생략)                      ④ <u>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u>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u></p> <p>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lt;삭 제&gt;</p>

<신 설>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